##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30

발의연월일: 2024. 7. 29.

발 의 자 : 홍기원 · 윤종군 · 박상혁

정진욱 • 한민수 • 윤후덕

박 정・김태년・이기헌

민병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리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조정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아니하 거나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지 아니한 발주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과태료) ① (생 략)	제9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1의2.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적정 공사기간 조		
	정을 검토하지 아니한 발주자		
<u>1의2.</u> (생 략)	<u>1의3.</u>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